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검토 보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095호
- 제출자 : 유희 의원 외9명
- 제출일 : 2017년 11월 16일
- 회부일 : 2017년 11월 17일

2.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안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안산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4. 주요검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 (2017. 11. 11 ~ 11. 15) 결과 : 부서의견

□ 부서 검토의견

-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조례안 시행시 예상 문제점 : 해당사항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 2개소(안산시장애인복지관,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경기도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가 설치·운영은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됨
- 조례안 시행시 주무부서 : 노인장애인과
- 조례안 시행시 재정부담 및 예산관련 사항 : 의견 있음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규정에 따라 시행초기 임차료 등 연 4억원 이상 소요되며, 향후 운영을 위해서도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2억원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 부담이 예상됨. (붙임3 비용추계)

5. 검토사항

가. 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본 제정안은 전체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 주요 내용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되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제30조의2)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그간 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정책 수립·시행으로 돌봄 부담을 지닌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가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 주요검토사항

-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규정에 부합하므로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 및 제25 조에 따라</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에 따라</p>

- 제2조제2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실질적 보호자” 및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장까지 장애인 가족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고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 인의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 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 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 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p>

- 제4조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제5조 7호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임

그러나 본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상위법 근거없이 별도의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규정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산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우리시 실제 사업 추진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관련 지원 센터들과의 기능 조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097호
- 발의자 : 김동규 의원 외9명
- 발의일 : 2017년 11월 16일
- 회부일 : 2017년 11월 17일

2. 제안이유

- 안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단체의 내용을 정함(안 제7조에서 제9조)
-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0조)
- 영주귀국 주민지원과 관련 포상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4. 주요검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2017.11.11.~ 11. 15) 결과 : 의견있음 (부서의견)

□ 조례안 상위법 저촉여부

-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은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회의 ('96.12.4.) 및 보건복지부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고,
- ☞ 동 제정 조례안의 각 개별 조항의 내용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 현재 동일하게 의원발의 중인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의 범위에도 사할린한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 ☞ 여러 개의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중복하여 별도의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은 대상자들에 대하여 조례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가 저하될 여지가 있어 입법 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시행시 재정부담 및 예산관련 사항

- ☞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정부주도의 모국방문 기념행사 및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외에도 민간단체의 행사비 예산 요구 등으로 별도의 추가 재정부담 발생과 업무의 중복이 우려되므로
- ☞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대로 정부 및 우리 시에서 직접 주체가 되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행사 업무 등을 추진하고, 또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의 각종 후원 행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 유지

□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조례안 제2조(정의)의 1항에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을 러시아에서 출생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정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지원대상 범위와 상이하여 수혜대상자들의 혼란 초래 및 재정부담이 우려됨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45.8.15.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

☞ 정부에서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공 및 복지 급여, 집기비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 방안이 결정되므로, 이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하는 시설 및 아파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사할린한인에 대하여 거주지 시·도를 통해 자격결정사항 및 수급정보이력 사항 등 실태 조사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사할린한인 입국자 중 역 귀국자 등 현황 철저 파악하고 그간 변화 추이를 검토·분석하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등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지원대상)의 제2호에서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범위와 상이하여 수혜대상자들의 혼란 초래 및 재정부담이 우려됨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45.8.15.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 조례안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기념행사 등 지원)

☞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영주귀국 주민의 사할린 역방문과 사할린 한인 1세의 모국방문, 2·3세의 모국방문 기념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매년 고향마을 한마당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5. 검토사항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에 정착한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할린한인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년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오다, 1992년부터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하여 영주귀국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3,035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우리 안산시는 625명이 계심.
- 정부에서는 1996년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할린에 거주하다가 모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할린에 남은 가족파의 이별 등 비인도적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됨.

나. 세부내용검토

- 안 제2조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과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영주귀국 주민의 책무를 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음

- 안 제5조는, 매년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2017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를 준용하여 지원 대상범위를 영주귀국주민 본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규정함

보건복지부는 지침으로 지원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장애인 자녀로 한정하였으나 이는 수당지급 등 국가의 수혜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함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한국에서 만 1년을 거주해야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안산시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제8조의 관심제고, 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교육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

①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 사할린 동포 지원이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 정부주도 모국방문 기념행사 및 우리시 자체 행사외에도 민간단체의 행사비 예산 요구등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어
- 별도의 조례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② 시의회 입법고문 - 참고 5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간주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자로 요건을 충족하여 안산시의 법적주민이 분명하고 이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안산시 고유사무에 해당
-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③ 법제처 법령 해석사례 - 참고 2

- 관내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곤궁을 해소하는 것은 자치단체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 사할린동포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한 주민만을 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

라. 종합검토

- 본 조례안은 안산에 정착한 62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고국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담당부서에서 사할린 동포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법에 따라 고려인으로 분류되므로 동조례와 중복되어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고려인 동포는 구한말 일제 강점기에 연해주로 자발적으로 이주후 구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등으로 강제 이주된 주민을 말하며

「재한외국인주민처우 기본법」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지원이 없고

사할린동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제의 강제징용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구제와 저축금. 미지불임금. 보험금. 연금 등 외교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사할린 거주 한인을 의미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법적체계와 지원의 대상이 틀린 사할린 동포를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조례로 지원할 수 없고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또 다른 담당부서의 의견으로는 정부주도 모국방문 및 우리시 자체 행사 외에 민간단체 행사비 예산 요구등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 하므로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사할린 주민행사를 추진하고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의 행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 동 조례의 제정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을 체계화하여 민간의 후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따라서 많은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과 타 지자체에서 조례가 입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정책 지원을 위하여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096호
- 제출자 : 성준모의원 외6인
- 제출일 : 2017년 11월 16일
- 회부일 : 2017년 11월 17일

2. 제안이유

-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고려인에 대한 지원 및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라. 고려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
- 마.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바. 고려인 주민에 대한 포상 및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

4. 주요검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주민 처우 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 (2017. 11. 11 ~ 11. 15) 결과 : 부서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1. 상위법령과 저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안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관련 지원조례가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려인을 지원하는 별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체계적인지 의문이고, -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고려인 지원조례를 만들 때에도 법제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음. (법제처 의견 13-0254, 안산시 고문변호사)
3. 다문화정책과 부서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2013), 김포시(2015), 경기도(2016) 전국 3개지자체에서 고려인지원조례가 既 운영되고 있고,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며, 동포임에도 언어·문화적의 차이가 부모의 고국인 한국생활에서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열악한 생활환경속에 많은 기관·단체가 고려인 지원정책들에 관심을 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 대두 - 조례(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同조례(안)이 既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경기도 고려인 지원 조례 내용과 근거를 같이하고 있어 시행 시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9조(고려인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은 김포시 조례에만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김포시 역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위원회와 운영성격이 중복되는 점에서 별도의 고려인주민 지원위원회 설치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다고 사료됨. - 同조례안 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면 제9조1항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를 둔다. 를 ~둘 수 있다.로 검토가 요구됨.

5. 검토사항

가.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2017. 11. 11 ~ 11. 15.)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

나. 조례제정의 배경은,

- 고려인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일제의 폭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우리 동포들임.
- 소련연방이 붕괴됨에 따라 독립된 연방국가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러시아어만 사용하던 고려인들은 생존을 위해 일부는 러시아로 역이주하였고 일부는 한국으로 일자리를 위해 이주했으나 한국어가 되지 않아 모국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 조차 배제되어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음.
- 정부에서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고려인 지원관련 입법동향은

-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김포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3. 10. 1)
 - ▲ 고려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 운영, 기념행사 지원 등
 -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5. 6. 10)
 - ▲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기념행사 지원, 명예시민 등
 -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016. 2. 24)
 - ▲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사업위탁, 명예도민 등

라. 조례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

①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현황(조례안 제2조)

-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은 2017. 8월말 기준으로 13,672명으로 전국 70,688명의 19.3%, 경기도 30,242명의 42.8%를 차지하고 있음
- 선부2동 4,555명, 원곡동 4,238명, 사동과 해양동에 3,548명 거주하여 85%이상이 3개소에 집중거주하고 있음

②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 관련,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 지원사업 현황은

- 안산시 거주 고려인은 현재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및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 안산시의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현황

구분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안산시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외국인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상담-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 외국인기업의 필요한 행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용 정보제공- 교육, 직업 및 전문교육 훈련사업-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에 관한 사업- 이해교육·홍보사업-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 보호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시장

③ 안산시 고려인 주민이 전국의 20%, 경기도의 43%를 차지하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 안산시가 전국제일의 다문화 도시에서 더 나아가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판문으로서의 자리매김 하고
- 현재 운영중인 고려인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고려인 자생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립된 조례 제정 필요

마. 관련 부서 검토의견 - 다문화지원본부(다문화정책과)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있는데 굳이 고려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별로로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 제9조의 고려인주민 지원위원회 설치는 유일하게 김포시만 설치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지 않고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위원회와 운영성격이 중복되는 점에서 별도의 고려인주민 지원위원회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바. 종합 검토의견

- 거주 고려인 주민 대부분은 선부동 땃골 등 집중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고려인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자생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거주,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의 여건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그러나, 다문화정책과의 기존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여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다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 등은 조례 제정 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3087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7년11월 10일
- 회부일 : 2017년11월 17일

2. 제안이유

- 환경부로부터 대부도 및 대송습지가 경기도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난 3개년 간 추진해온 생태관광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 12. 31. 만료 예정임.
- 공모절차를 거쳐 동 사업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 재위탁하여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 위탁기간 : 2018. 1. ~ 2020. 12.(3년)
- 운영기관 : 경기도 소재 생태·관광 관련 단체·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위탁사무 :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 사업비 : 총 300,000천원(연 100,000천원)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환경부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주요 위탁내용

구분	주요사무	예산(천원)	비고
계		100,000	
사무국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단체 운영 및 인건비 등 제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상근 1명 이상) - 사무국 운영비 및 생태관광 관련 기자재 구입 등 	36,000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대표 상품 개발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대표 상품 개발 - 대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아이템·관광상품 개발 등 	33,000	
주민교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 - 관광수용태세 및 생태관광 주민 교육 - 생태관광 선진지 벤치마킹 및 교류사업 	17,000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홍보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지 홍보물(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 생태관광 관련 전문가·자문단 팸투어 	14,000	

○ 사업계획

사업기간	추 진 내 용
2018. 연중	<p>1.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중간 조직화 안정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조직 강화 - 생태관광 육성 주민의견 수렴활동
2018. 분기별	<p>2. 주민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포럼 개최 및 벤치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여행기업 주민여행사 창업, 마을디자인 주민학습 코칭 - 포럼 개최 및 생태관광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등
2018. 상반기	<p>3. 생태관광 핵심 컨텐츠 발굴 및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대송습지 에코로드 프로젝트 등 시 핵심사업 공동 추진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개발
2018. 분기별	<p>4. 생태관광자원 조사연구 및 관리를 위한 현장견학 및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현장견학 및 정책조사 - 대부분 대송습지 보전 및 관리
2018. 하반기	<p>5. 생태관광 정책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생태관광 자원 체계화 및 홍보자료 발간 - 타 기관 행사·축제 시 대부분 생태관광 홍보부스 운영

다.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자연환경 보전법
-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5조

라.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경기도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인 대부도·대송습지에 최적화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위주의 생태 관광활성화가 필요,
-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요구,
- 지역 실정에 밝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생태관광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4. 검토사항

- 본 동의안은 환경부로부터 대부도 및 대송습지가 생태지역으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해온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전문능력을 가진 민간에 위탁해 왔고 사업이 종료됨
- 2018년 생태관광지로 다시 지정되어 3년간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생태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능력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3088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7년11월 10일
- 회부일 : 2017년11월 17일

2. 제안이유

- 2018. 5. 31. 자로 만료되는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 시설현황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2(사동)
 - 시설장 : 강기태
 - 규모 : 연면적 2,886.92m²(874평) 지하1층 ~ 지상3층
 - 사용승인 : 2013. 8. 7.(개관일 2013. 11. 1)
 - 주요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수중재활·재활·언어치료·직업훈련실 등
 - 주요사업
 - 전략기획 : 조사연구사업, 교육 및 연수, 사업계획평가, 지역연계
 - 운영지원 : 시설환경, 휴게공간, 급식제공, 기관안내, 재산관리
 - 상담사례 : 상담, 교육재활, 사회재활, 지역복지, 재가복지, 문화여가사업

○ 운영주체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 대표 : 김성겸
-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8 동산교회
- 수탁기간 : 2013. 6. 1 ~ 2018. 5. 31(5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18. 6. 1. ~ 2022. 5. 31.)
- 위탁사무 :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부설 포함) 운영·사업 일체
- 예산지원 : 2018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완료
 - * 2017년 기준 1,623,977천원
 -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 1,394,000천원
 - 안산시상록장애인단기보호 : 229,977천원

다. 민간위탁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1조
-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7조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장애인 관련 민간전문기관(단체) 위탁 운영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동의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6부터 운영하고 있고 최초 위탁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후
- 위탁기간 5년이 경과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임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9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는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안산시 상록수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 안산시에는 32,02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은 복지관으로 단원구 초지동에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상록구 사동에 안산시 상록구장애인 복지관이 운영중이며 재활작업장을 단원구 신길동에 운영하고 있음
- 안산시 상록수 장애인 복지관은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이라면 누구나지원대상이 될수있음

다. 민간위탁타당성유무

-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서 적극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2개소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직영보다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3079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7년11월 10일
- 회부일 : 2017년11월 17일

2. 대상사업

-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 청문당 복원 토지취득
- 안산시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
- 하늘공원 봉안시설(제6단계) 설치공사
- 국제문화센터 건립

1.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가 제안이유

- 현재 보훈·향군단체는 10개 단체로 선부동 단원구 노인회관(보훈·향군회관복합)에 5개 단체가 입주하고 舊상록구청사 가건물에 5개 단체가 나뉘어 각각 입주하고 있음
- 선부동 복합건물의 경우 단원구 노인회관 사용 공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지하~3층($3,840\text{m}^2$)을 사용하고 보훈단체는 4~5층 일부(364m^2)를 사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양측 모두 사용 공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 舊 상록구청사도 15년 가량 존치된 낡은 가설 건축물로써 장소가 협소함은 물론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단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상록구 본오동 878-2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차장/노외)
- 대지면적 : 880m^2 (부지면적 $1,760.1\text{m}^2 \gg 50\%$ 분할예정)
- 연 면 적 : $2,160\text{m}^2$ (지하1 / 지상4)
 - 건폐율 : $520\text{m}^2 \div 880\text{m}^2 \times 100 = 59.1\%$ (법정 70%)
 - 용적률 : $1,760\text{m}^2 \div 880\text{m}^2 \times 100 = 200\%$ (법정 1,100%)
- 주 용 도 :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 사 업 비 : 7,803백만원
- 세부시설
 -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 지상1층 : 관리실, 주차장(26대-필로티 포함)
- 지상2층~3층 : 사무실 10개
- 지상4층 : 대강당, 소회의실, 물리치료실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비고
계	78		4	40	34	
국 비	5			5		국가보훈처 구두 협의
시 도 비						
시군구비	73		4	35	34	
기 타						

※ 2018. 4월 국·도비 추가 확보 계획

다. 검토의견

- 안산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보훈향군 10개 단체가 활용하게 될 회관임
- 현재 상황은 10개단체가 단원구 노인회관에 5개, 구 상록구청사 가 건물에 5개 단체가 분리하여 입주하여 있고 현재 사용면적도 협소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향군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로 건립타당성은 분명히 있으나
- 총사업비 78억원중 국비지원이 5억밖에 되지 않으니 도비 확보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청문당 복원 토지취득(안)은

가 제안이유

-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으로 조선시대 4대 만권당인 진주 유씨 종가인 청문당(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과 차종가인 경성당(경기도 인정 전통종가)을 연계·정비하여
- 문화재를 활용·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힐링·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대상지(청문당) 현황

- 지 정 별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
- 지 정 일 : 2000. 4. 17.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77(부곡동)
- 건립년도 : 1560년경
- 건축규모 : 목조건물 1층 4동
- 역사적 가치 :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태동한 곳이며 조선 4대 만권당 중 한곳으로 안정복의 민족사학이 발원되고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학문을 배우고 깨우치던 학예의 전당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사업내용 : 문화재 복원(활용)을 위한 연차별 토지매입
- 토지매입 : 1,280m² 1,124백만원 (2015년 이후 예산부족으로 중단)
(2017. 8. 현재, 단위 : 백만원, ₩)

토지현황		국유지		기부채납		기 매입			미 매입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17	10,359	1	169	1	1,095	3	1,280	1,124	12	7,815	9,829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치 : 부곡동 259-3 외 11필지
- 매입예정가 : 9,829,853천원 (주변시세에 따라 공시지가 3배 적용)
- 매입대상 토지 현황

(단위 : ㎡, 원)

연 번	위치	지목	면적	소유주	공시 지가	취득예정가
	계		7,815			9,829,852,800
1	부곡동 259-3	대	723	유락형	670,000	1,453,230,000
2	부곡동 260-1	대	409	이홍섭	670,000	822,090,000
3	부곡동 261-1	대	612	지은주	655,900	1,204,232,400
4	부곡동 261-2	전	165	이기영	395,000	195,525,000
5	부곡동 261-16	대	511	안효문	636,500	975,754,500
6	부곡동 261-17	대	356	이상윤, 이미숙	696,800	744,182,400
7	부곡동 261-18	대	352	편인준	696,800	735,820,800
8	부곡동 261-19	도로	391	진주유씨	221,100	259,350,300
9	부곡동 261-20	대	560	이기영	677,300	1,137,864,000
10	부곡동 261-24	대	783	이기영	653,900	1,536,011,100
11	부곡동 산5-4	임	614	안효문	20,700	38,129,400
12	부곡동 261-41	과수원	2,339	안효문	103,700	727,662,900

○ 활용계획

- 추진방향
 - 청문당(큰집) · 경성당(작은집) 연계 활용
 - 역사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예) 만권당, 강세황, 김홍도, 성호장, 부계전도, 부계팔경, 종가, 고택 등
 - 고택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기 : 2018년 ~ 지속
- 운영인력 : 문화관광해설사 및 전문강사 활용
- 2018년도 주요 프로그램(안)

사업명	대상	추진현황	주요내용
단원, 강세황은 내 친구	초등학생	5회(150명)	
전통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학생	3회(90명)	자유학기제 연계
HELLO, 청문당	대학생(SNS 활용이 가능 한 대학생 15명, 외국 인유학생 15명)	2회(60명)	1박2일 한옥스테이
한옥콘서트/현대인, 책과 음악에게 묻다	누구나	2회(400명)	고택음악회 토론버스킹 등

⇒ 2018년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지원사업(생생문화재) 신청

다. 검토의견

- 청문당은 안산을 대표하는 인물 중 김홍도와 강세황이 관련된 건물로 역사적 가치와 시 이미지 제고의 상징성은 높으며
- 산업단지 배후 도시로 계획 된 우리시의 여건상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 발전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다만 토지매입에만 112억이 소요되고 진입도로 확보 등 부대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시비가 소요되는데 도 지정 문화재임에도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 도비 지원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안산시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안)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350여명의 장애인들이 대기 중으로, 시설 건립에 대한 민원 요구가 있으며,
-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에 이용 장애인은 지적, 뇌병변, 자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5,498명 중 시설 이용자는 345명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6개소) 및 주간보호시설(9개소) 총 15 개소에 345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전체 시설 중 상록구에 집중(10개소)되어 단원구에 시설 건립이 필요하여
-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매입대상 : 1필지

대상지	지목	토지면적 (m ²)	매입금액 산정[2017년 기준] (소유주 LH공사 제공)
신길동 1693	대	766.8	1,000,000천원

복지시설 건립

용도	건물		건립비용
	연면적(m ²)	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1,716	지상4층	5,625,000천원

- 위 치 : 단원구 신길동 1693
- 부지면적 : 766.8m²(232평)
- 규 모 : 지상 4층(1,716m², 520평)

○ 주요시설(안)

구분	주요시설
1층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작업장), 프로그램실, 사무실
3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실), 물품보관실
4층	식당, 휴게실, 프로그램실,

○ 소요예산 : 5,625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공사비	5,304백만원	8,50만×1.2×520평	평당 850만원×1.2(환경인증, 장애인편의시설 포함), 2015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참고
실시설계비	230백만원	공사비×4.28%	
감리비	77백만원	공사비×1.45%	
시설부대비	14백만원	공사비×0.27%	

□ 건립後 운영계획

- 운영주체: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운영
- 운영형태 및 규모
 - 주간보호시설 : 이용자 30명 / 종사자 10명
 - 직업재활시설 : 이용자 50명 / 종사자 16명
- 운영비 : 연간 10억 / ※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 근거

다. 검토의견

-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 및 직업능력 배양은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직업재활과 주간보호를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은 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 분담 비율이 도내 최고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을 비추어 볼 때 양적인 시설증가로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보다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시간을 조정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적인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하늘공원 봉안시설(제6단계) 설치공사(안)은

가. 제안이유

- 우리시 부곡동 하늘공원 내 설치된 봉안담은 5단계에 걸쳐 총 10,204기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2017. 8월 현재 잔여 기수가 약 1,034기 가량임.
- 현 추세로 이용할 시 하늘공원 내 이용 가능한 봉안시설은 2018년 하반기에 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늘공원 내 잔여 부지에 봉안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하늘공원 봉안시설(6단계) 설치공사
- 위치 : 상록구 부곡동 산12 하늘공원
- 사업규모 : 봉안담 신축 5,232기, 조성면적=2,658m²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0.
- 총사업비 : 2,690백만원
(공사비 2,415 보전부담금 140 분묘보상 76 설계비 50 부대비 9)
※ 공사비 재원구성 : 국비(70%) 1,690.5, 도(15%) 362.25, 시(15%) 362.25

하늘공원 장사시설 현황						(2017. 8. 31.현재 / 단위 : m ² , 기)
명칭	위치	면적	유형	설치기수	잔여기수	비고
하늘 공원	부곡동 산12번지	19,240	매장	488	합장 109	매장 만장
			봉안담	10,204	1,034	

*'18.상반기 만장예정 (한달 평균 100기 사용)

□ 추진사항 및 계획

-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계획 수립 : 2016. 10.
-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 2017. 6.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상정 : 2017. 7.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7.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7. 10.
- 사업예산 확보 : 2017. 12.
- 설계심사 및 공사업체 선정 : 2018. 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8. 3. ~ 12.

다. 검토의견

- 최근 화장위주로 장사문화가 변화되어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우리시 사망자는 연평균 2,635명이고 관내 봉안당 사용은 연간 100여기로 현재 잔여기수인 1,034기는 1년이내 소진될 전망
- 시민들의 봉안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5,232기의 봉안당을 신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단, 화성시에 5개시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에 26,440기의 봉안시설이 2019년까지 건립되므로 우리시가 가능한 많은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봉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국제문화센터 건립(안)은

가. 제안이유

- 안산시 외국인주민은 최근 6년간 4만1천명에서 7만6천명으로 1.8배 이상 증가 【2015. 11. 행정자치부 통계자료 : 안산시 외국인주민 75,965명(주민등록인구의 10% 차지)】 하여
- 이에 대한 행정인력과 사업예산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설은 포화 상태로 있어
- 외국인주민들의 각종 행정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한 국제문화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 국제문화센터 건립으로 외국인주민들의 통합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 조기정착 등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역할로 국제 다문화도시 안산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단원구 부부로 44-1(원곡동)
- 사업기간 : 2018. 1. ~ 2018. 6.
- 사 업 비 : 15억원(시비)
 - 건물매입 10억원, 리모델링비 5억원
 - ☞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중이며 확보시 시비 감액하겠음.
- 사 업 량 :
 - 건축연면적 : 442.02m²(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유관기관 통합서비스 센터, 한국어교실, 여성근로자 센터, 상담실, 만남의 장소 등

□ 추진사항 및 계획

- 국제문화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4. 9. 24.
- 공유재산 취득 심의(당초) : 2014. 10.
- 국제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1차) : 2014. 11. 19.
- 국제문화센터 건립 주민 의견수렴(2회) : 2014. 11.~12.
-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강구 : 2015. 3.~6.
- 외국인주민센터 현안 보고 : 2015. 8. 6.
- 국제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2차) : 2015. 9. 7.
- 공유재산 취득 심의(변경) : 2015. 12.
- 2018년 본예산 사업비 반영 : 2017. 12.
- 건물매입, 구조안전진단, 실시설계 등 : 2018. 1.~ 3.
-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8. 4.
- 준공 및 개소식 : 2018. 6.

다. 검토의견

- 전체인구 10% 이상을 외국인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에 비추어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를 해소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문화센터 매입은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함
- 현재 매입코자 하는 건물이 위치로는 다문화지원본부와 인접하여 활용성이 높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활용가치가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52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7년 10월 11일
- 회 부 일 : 2017년 10월 13일

2. 제안이유

- 4.16 세월호 참사이후 4.16 정신에 따른 안산시의 도시비전과 주요 실천과제를 정하여 지역의 슬픔을 승화시키고 재난이 없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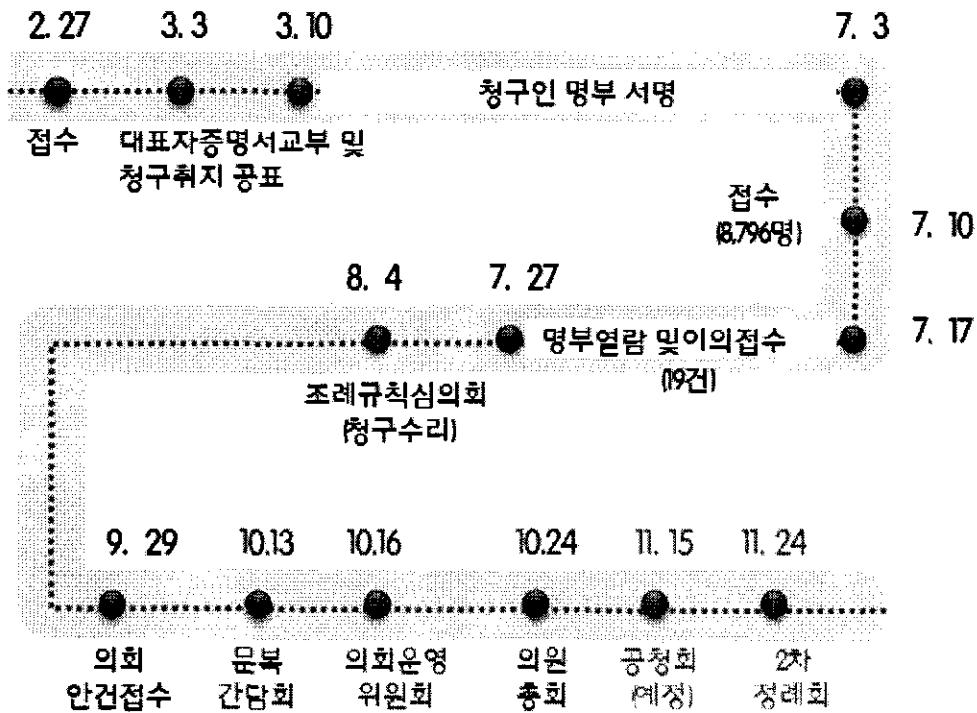
-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위와 4.16정신을 반영하여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조부터 제7조)
- 나. 4.16 참사 극복을 위한 기록과 시책추진 및 기념일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
- 다. 4.16에 대한 시민교육과 학교협력교육 및 연구추진을 규정 (안 제15조에서 제18조)
- 라. 시민협의회 및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행정 협의토록 함 (안 제20조부터 제23조)

4. 주요검토사항

- 가. 관계법령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 다. 주민청구내용

○ 청구인 : 윤기종(4.16안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추진경과



○ 청구요건심사(조례규칙심의회) : 2017.8.4.(청구 수리)

(단위:건)

유효서명	제출서명	무효서명
6,166	8,796	2,630

※ 무효서명 : 중복제출, 19세미만, 미거주자, 주소불일치, 대리서명 등

5. 검토사항

가. 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본 제정안은 2014년 진도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 4. 16 정신을 계승하여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도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됨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지위와 4.16정신을 반영하여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1조부터 제7조), 4.16 참사 극복을 위한 기록과 시책추진 및 기념일에 대한 내용을 정함은 물론(안 제8조부터 제14조), 4.16에 대한 시민교육과 학교협력 교육 및 연구추진을 하며 (안 제15조에서 제18조), 시민협의회 및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실행을 하는 체계로(안 제20조부터 제23조) 구성됨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4.16 관련 특별법으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이법 제 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과 예산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주민청구로 제안되었음
-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가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 기간이 한정됨에 따라

- 4.16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큰 슬픔을 승화하여 안전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 주요검토사항

- 전문은 조례에 둘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법령에서 헌법만이 전문을 두고 있고 법령에서 전문을 둔 사례는 없음
- 주민조례 청구인들이 전문을 두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2017. 11. 15 공청회) 4.16 참사를 겪은 안산시 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함은 물론 안전사회의 도시비전에 대한 시민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전문을 두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전 문</p> <p>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와 사회의 운영원리, 운영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p> <p>안산시는 4.16 참사의 피해지역이라는 아픔을 넘어 새로운 도시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4.16 참사가 안산시민에게 부여한 시대적 책임이며 과제이다.</p>	<p>전 문</p> <p>4.16 참사는 물질과 경쟁 중심 사회에서 사람과 안전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사회 운영방식의 기본가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p> <p>안산시는 4.16 참사의 피해지역이라는 아픔을 넘어 새로운 도시비전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적인 책임을 안고 있고</p> <p>이는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다.</p>

우리는 안산에서부터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여기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찾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에 생명과 안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4.16의 정신과 가치, 도시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4.16 정신계승 및 참사극복을 위한 시책, 추진체계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4.16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안산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의 손길을 모아 제정되었다. 조례로 응집된 시민의 힘이 안산시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4.16 참사와 희생을 기리는 데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의 의지를 모아 4.16참사와 희생을 기리면서 생명과 안전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가 밀알이 되어 안산에서부터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사람 중심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

- 제1조의 조례의 목적과 구체적 실현수단을 명확히 함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가치로서 4.16 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안산을 만들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안산시의 새로운 도시가치와 비전,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4.16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 회복 및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제2조 조례의 지위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조례의 제 개정이 불가능하고, 제2항은 시장 등의 책무 규정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조례의 지위)</p> <p><u>① 이 조례는 안산시의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갖는다.</u></p> <p><u>② 안산시와 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u></p>	<p>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p> <p><u>이 조례는 4.16. 정신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u></p>

- 제3조 정의는 항을 호로 표시하고 용어 순화기준에 따라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p>① '4.16 정신'이라 함은 4.16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p> <p>② '4.16 교육'이라 함은 4.16 참사의 사회적 의미,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p>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4.16정신"이란 4.16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3. "4.16교육"이란 4.16 정신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4조는 안산시장과 안산시 의회의 책무를 정함, 일부 용어순화 하여 자구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책무) <p>① 안산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추진체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p> <p>② 안산시의회는 새로운 도시 안산의 비전과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p>	제4조(책무) <p>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안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비전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제5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안전사회 건설이 전국단위 과제 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한 1항과 2항의 내용이 중복됨으로 함침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p> <p>① 안산시장은 4.16 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p> <p>② 안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선언과 공동실천,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p>	<p>제5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p> <p>시장은 4.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명과 안전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p>

- 제6조 4.16정신은 제3조(정의)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삭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4.16정신)</p> <p>① 4.16정신은 4.16 참사 이후 안산시와 모든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정신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명과 안전의 가치 2. 인간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증진과 보호 3.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 4.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가치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 제7조 도시비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 정책적 사항이므로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으로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416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p> <p>① 안산시장은 416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② 안산시장은 도시비전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16 정신에 맞는 안산시 도시 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맞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안산시 법정·비법정 계획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p>③ 안산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장기 발전계획, 분야별 법정계획 등을 수립할 때 4.16 정신에 기반 한 도시비전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p> <p>④ 안산시장은 시민참여 방식을 통해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p>	<p>제6조(도시비전계획의 수립)</p> <p>① 시장은 4.16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비전계획(이하“비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16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가치와 비전 2. 4.16정신에 부합하는 시정운영 원리 및 행정운영시스템 3. 법정·비법정 계획에 4.16정신의 반영 및 연계 방안 4. 효과적인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제1항의 비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제8조 기록을 위한 조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만 생산·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16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의 정의 및 생산·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문구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기록을 위한 조치) 안산시장은 4.16 참사와 관련한 과정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제7조(기록을 위한 조치)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제9조 추모사업 추진은 피해지원 특별법 상 근거조항에 따른 추모 사업의 시행으로 조항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추모사업 추진) 안산시장은 4.16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사업을 전개해야 한다.</p>	<p>제8조(추모사업 등 시행)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추모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p>

- 제10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원인규명 등은 국가사무이므로 같은 법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에 따라 협조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p>	<p>제8조(진상규명의 협조)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 제11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세월호 피해지원특별법 제31조(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 개발·시행)제1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맞도록 구체화하여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안산시장은 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9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 등) 시장은 세월호피해자지원법 제3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아픔을 겪는 모든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한다

- 제12조 시민현장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별개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반영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으므로 삭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시민현장) 안산시장은 4.16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새로운 안산과 도시비전을 위해 시민현장에 4.16 정신을 반영해야한다.	< 삭제 >

- 제13조 실천선언은 도시비전 계획을 실천하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실천선언) ① 안산시장은 4.16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도 시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4.16 실천선 언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발표해 야 한다.	< 삭제 >

- 제14조 안산기념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모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날로 운영 중이므로 안산시 추모 기념일로 지정 운영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안산기념일 지정) ① 안산시장은 4월 16일을 기념 일로 지정한다. ② 안산시장은 4월 16일에 관내 모든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추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홍보한다.	제10조(기념일 지정) 매년 4월 16일 을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추모일 로 한다.

- 제15조 교육추진은 의미를 함축하였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교육 추진) <p>① 안산시장은 4.16 교육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p> <p>② 안산시장은 산하 기관과 위탁 기관은 물론 시민교육기관과 단체들이 4.16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p> <p>③ 안산시장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재개발, 강사양성 등 을 지원할 수 있다.</p>	제11조(교육 추진) <p>① 시장은 4·16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p> <p>② 시장은 교육기관·단체에서 4·16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제16조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은 시민교육이 아닌 학생교육은 교육청 고유권한이므로 삭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교육 실시) 안산시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16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삭제 >

- 제17조 연구추진은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시비전 계획 및 시책추진에 중복되므로 연구추진에 대한 재량 사항으로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연구추진) 안산시장은 4.16의 의미와 정신이 체계적으로 해석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4.16 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추진) 시장은 4.16정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 연대협력 강화는 재난 예방과 극복에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한 시대이므로 현 조문 유지
- 제19조 재정 및 행정지원은 시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재량으로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재정 및 행정 지원) 안산시장은 4.16 관련 모든 활동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3조(재정 및 행정 지원)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 시민협의회 구성은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협의회를 두려면 시장에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정의규정과 같이 통일적으로 규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0조(시민협의회 구성)</p> <p>① 안산시장은 안산 내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들과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협의회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 2. 4.16 참사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반 활동 지원 3. 시민현장 제정 및 시민선언 조직 4. 4.16 시민교육 추진 5. 4.16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 6. 재난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내외 도시들과 연대와 협력 추진 7. 기타 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p>제14조(시민협의회의 구성)</p> <p>① 시에 시 관내의 다양한 기관·단체, 시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지원 및 이행평가 2. 4.16교육 3. 4.16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21조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와 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1조(대표자회의)</p> <p>① 협의회는 참가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및 공모를 통해 추천된 시민들로 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p> <p>②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총회를 대신한다.</p> <p>③ 대표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 및 약간명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자세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p>	<p>15조(구성)</p> <p>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공모를 통하여 추천된 시민들로 구성하는 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p> <p>② 협의회와 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제22조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은 자문기관이므로 하위에 업무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등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2조(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p> <p>① 안산시장은 협의회를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내외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②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 삭제 ></p>

- 제23조 전담부서 지정을 재량 조항으로 수정하여 부서 뿐만 아니라 팀으로 조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3조(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지원 협의체)</p> <p>① 안산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p> <p>② 안산시장은 협의회가 행정과 긴밀한 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p> <p>③ 안산시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16조(전담부서 지정 등)</p> <p>시장은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p>

- 제24조 시행규칙은 현행 유지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4.16 참사의 슬픔을 승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이고 기존의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한시기간이 2018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4.16 참사의 슬픔과 극복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함
- 그러나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및 공청회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시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함
- 4.16 참사의 가치는 계승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